

# 심사보고서

의안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41호
심사일자	2026. 6. 16.



위원장 신영재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441
------	-----

2026년 6월 16일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발의자: 2026. 5. 29. 장원만 의원

나. 회부일자: 2026. 6. 1.

다. 상정일자: 2026. 6. 16. 제332회 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 2. 제안설명 요지 (장원만 의원)

### 가. 제안이유

- 현행 조례는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의 범위와 내용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사업 추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음. 이에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지원 사업을 구체화하고, 센터 운영의 투명성 및 정책 추진의 현장성을 높이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발달장애인 지원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발달장애인 복리 증진 시책 추진 시 의견청취 규정 신설(안 제3조의2)

-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구체화(안 제6조)
- 센터 운영규정 공개 의무화(안 제7조제3항)
- 센터 운영 등에 관한 의견청취 의무 신설(안 제8조제3항)

####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0조, 제11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2조  
「장애인복지법」 제5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예산조치: 해당없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 부서합의: 관계 부서 합의 완료(장애인복지과)
- 기 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련 법령 별첨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진미숙)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2026년 5월 29일 장원만 의원이 발의하고  
의안번호 제441호로 접수되어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발달장애인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의 종류를 상위법에 맞게 구체화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임.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 ▶ **안 제3조의2(의견청취)**에서 「장애인복지법」 제5조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관련 기관, 단체, 전문가,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 시행하도록 하고,
- ▶ **안 제6조(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에서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하여 송과구에서 추진하는 지원 사업의 종류를 상위법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 ▶ **안 제7조(평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제3항**에서 투명하고 효율적인 센터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평생교육센터의 운영 및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명시하고,
- ▶ **안 제8조(센터의 업무)제3항**은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방향으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평생교육센터를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음.

○ 이상과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정책 마련을 위하여 발달장애인과 보호자, 관련 전문가 등으로부터 충분히 의견을 수렴토록 명시하여 발달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지원과 발달장애인의 원활한 사회활동참여를 도모하고,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사업의 종류를 명시하여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지원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작성·제출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림.

####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최옥주 위원

- 관내 발달장애인 숫자는 많은데 비해, 센터의 이용 정원은 30명에 불과한데, 실제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 안현주 장애인복지과장

- 사실 수요자 대비 시설은 부족한 상황임.

**【답변】** 최현정 주민복지국장

- 시설은 부족하나, 새로운 시설 설치가 어려운 상황임. 향후 시설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 5. 심사결과: 원안가결